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4736 물품대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충북 청원군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충북 청원군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0가단271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11. 4.'를 '2010. 11.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84,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8.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포장'이라는 상호로 골판 지상자 제조·판매업을 하던 ◇◇◇에게 수지 제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45,384,11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포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거나 ◇◇◇에 의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45,384,1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 12, 14 내지 17호 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2009. 6. 9. 설립되었는데, 소재지가 ○○포장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충북 청원군 ○○면 ○○리 ○○○-○이고, ○○포장과 마찬가지로 골판지상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

◎◎이 11,000주, △△△가 1,000주, ▽▽▽이 4,000주, □□□가 4,000주를 출자하였는데, ◎◎◎은 ◇◇◇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가 되었고, △△△는 ◇◇◇와 ◎◎◎의 딸이며, ▽▽▽과 □□□는 ◇◇◇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기들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은 그 후 자신의 보유주식 11,000주 중 4,000주를 ◆◆◆에게, 2,200주를 ■■■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는 ◎◎◎의 여동생이다.

(다) ◇◇◇는 자기 소유의 충북 청원군 ○○리 ○○○-○ 공장용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공장(1층 ○○○○.○ ○○㎡ 및 2층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포장을 운영하다가, 2010. 6. 1.경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등 ◇◇◇ 소유의 자산¹⁾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2,267,000,000원 및 66,418,000엔 상당의 근저당권(9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청구금액 합계 325,860,598원 상당의 가압류(5건)도 이루어진 가운데,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0. 9.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포장과 같이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화번호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는데, 2010. 5. 31.까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포장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 이르러 2010. 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포장의 폐업 당시 근로자 ***, ***, ***, ***, ***, ***, ***,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외에 충북 청원군 ○○면 ○○리 ○○○-○○ 전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도로 ○○○㎡, 같은 리 ○○○-○○ 임야 ○○○㎡ 등이 있다.

***, *** 등 9명은 모두 2010. 6. 1. ○○포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포장의 종전 근로자 ***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포장 외의 신규 근로자로는 *** 1명과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포장의 매출 거래처 대부분인 55개의 업체들과 매출 거래를 이어갔는데, ○○포장이 2010. 6. 1.경 폐업할 때까지는 독자적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포장이 폐업한 이후 ◇◇◇ 소유의 그 제조설비를 이어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상 2009년 한 해 동안 ○○포장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물품 대금이 그 해 말을 기준으로 180,299,201원에 이른다.

(바) 피고 회사는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2009. 6. 1.자로 작성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리에 있는 ○○○㎡ 면적의 공장 건물과 ○,○○○㎡ 면적의 공장 건물은 2012. 7.경 각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1,0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 차임 1,650,000원에 임대광고가 이루어졌다.

(3)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포장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장 소재지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포장이 폐업할 당시의 근로자들과 공장 및 제조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 거래처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관계 등까지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포장의 사업주인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지배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인 자신의 처 ◎◎◎을 통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③ 피고 회사는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내세우나, 위 차임의 액수는 인근 공장 건물들의 임대광고에서 나타나는 차임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에게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도 어려운 점, 여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 ◇◇◇는 ○○포장을 운영하다가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제조설비 등의 사업용 자산을 모두 제공하고, ○○포장의 근로자들 및 매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등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 운영의 ○○포장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의 물품대금 채무 45,384,11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384,1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0. 11. 4.'은 '2010. 11.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